

## 2019년 개정 ICC 중재 진행에 관한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ICC의 중재판정부 정보 공개 및 중재판정의 발간 정책을 중심으로\*

Main Issues and Implications of ICC's 2019 Updated Note to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on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A Focus on ICC's Policy on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Arbitral Tribunals and Awards

안건형\*\*  
Keon-Hyung Ahn

### 〈목 차〉

- I. 서 론
  - II. 2019년 개정 ICC 중재 진행 지침의 주요내용
  - III. ICC의 중재판정부 정보 공개 및 중재판정 발간 정책
  - IV. 해외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중재판정 발간에 관한 태도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2019 개정 ICC 중재 진행에 관한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 지침, 중재판정부 정보 공개 및 중재판정 발간, 기밀성(Confidentiality), 투명성(Transparency)

\* 본 논문은 2019년 4월 19일 한국중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khahn@dju.kr / copy7318@nate.com.

## I. 서론

역사적으로 국제상사중재에서 기밀성(confidentiality)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고 기밀성의 범위와 효과성에 대한 의문의 제기는 매우 희소했던 것이 사실이다.<sup>1)</sup> 중재절차의 기밀성에 관한 논의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야 비로소 호주 대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의 *Esso v. Plowman*<sup>2)</sup>의 판례로 인해 촉발되었다. 이 사건에서 호주 대법원은 “기밀성이 오랜 기간 지켜져 왔던 중재의 관행이며 관습이고 나아가 중재의 사적(private) 성격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비밀유지의 의무는 프라이버시 보호와는 다르게 사적 중재의 ‘근본적 속성’(an essential attribute)은 아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전 세계 중재 커뮤니티를 놀라게 한바 있다.<sup>3)</sup> 이때부터 학계에서도 중재의 기밀성은 내재적(inherent)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의견과 중재가 그 자체로 기밀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희망하고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비밀유지가 이루어진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최근 들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제도가 발전하고 ISDS의 분쟁 주체 및 목적물의 공적(public) 성격 상 투명성(transparency)<sup>4)</sup>이 강조되면서 중재제도에 있어 기밀성에 대한 전통적 이해 및 관행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sup>5)</sup>

그렇다면, 국제상사중재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중재의 기밀성과 투명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로 매년 영국의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이 세계적 로펌인 White & Case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하여 발표해 오고 있는 국제중재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가 있다. Queen Mary 대학교의 2018년 설문결과에 따르면, 87%의 답변자들이 국제상사중재에서 기밀성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고, 대부분의 답변자들은 기밀성이 추가(opt-in)<sup>6)</sup> 방식 보다는 배제(opt-out)<sup>7)</sup>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1) 본 연구에서 기밀성은 (1) 분쟁의 존재 그 자체 및 중재절차의 개시, (2) 중재절차의 과정, 그리고 (3) 중재판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루기로 한다. Elina Zlatanska, “To Publish, or Not To Publish Arbitral Awards: That is the Question...”, *Arbitr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rbitration, Mediation and Dispute Management*, Vol. 81 No. 1, 2015, p. 25.

2) *Esso Australia Resources Limited v. Plowman* (1995) 183 CLR 10, High Court of Australia.

3) 류병운, “국제중재에서의 투명성과 기밀성의 경계(境界)”, 『서울법학』 제26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p. 630-32 참조.

4) 본 연구에서 투명성은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및 판정이유가 기재된 중재판정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의 개념으로 다루기로 한다.

5)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의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는 현재 ICSID 웹사이트를 통해 사건번호, 당사자명, 대리인, 중재판정부, 중재판정 등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https://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requestType=CasesRH&actionVal=ListCases> 참조.

되었다.<sup>8)</sup>

그런데 ICC 국제중재법원은 2019. 1. 1.부터 발효된 “ICC 중재규칙 하의 중재 진행에 관한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 지침”(Note to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on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이하 ‘ICC 지침’<sup>9)</sup>에서 “ICC 중재의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내려지는 모든 중재판정에 대해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의 송달일로부터 적어도 2년 이후에 발간하는 것을 기본규칙(default rule)으로 운영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중재기관들 중 하나이고, 따라서 이러한 ICC의 중재판정의 제도적 발간 정책 시행은 각국의 중재 관련 법규는 물론 각 중재기관들의 향후 정책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중재의 투명성과 기밀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주로 ISDS와 UNCITRAL 투명성규칙(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sup>10)</sup> 하에서의 투명성에 대해 다룬 강병근(2005)<sup>11)</sup>, 강병근(2013)<sup>12)</sup>, 김인숙(2014)<sup>13)</sup> 한지희(2015)<sup>14)</sup>, 김대중·김세진(2016)<sup>15)</sup> 등이 있고, 국제상사중재에서의 기밀성과 투명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류병운(2018)<sup>16)</sup>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ICC의 중재판정부 관련 정보 공개 및 중재판정 발간 정책 시행에 따른 국내의 중재 실무자 및 중재기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2019년 개정 ICC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ICC의 중재판정부 정보 공개 및 중재판정 발간 정책의 내용에

- 6) 여기에서 추가(opt-in) 방식이란 당사자 간 중재판정을 포함한 당해 중재의 모두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밀성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계약서의 조항으로 또는 별도의 비밀유지 합의서를 체결해야만 기밀성이 준수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 7) 배제(opt-out) 방식은 추가(opt-in) 방식과 달리 당사자 간 중재의 비밀유지에 대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밀성이 기본규칙(default rule)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 8)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8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 3. available at <http://www.arbitration.qmul.ac.uk/media/arbitration/docs/2018-International-Arbitration-Survey-report.pdf> (2019. 3. 4. 최종접속).
- 9) <https://cdn.iccwbo.org/content/uploads/sites/3/2017/03/icc-note-to-parties-and-arbitral-tribunals-on-the-conduct-of-arbitration.pdf> (2019. 3. 4. 최종접속) 참조.
- 10) <https://www.uncitral.org/pdf/english/texts/arbitration/rules-on-transparency/Rules-on-Transparency-E.pdf> 참조(2019. 3. 20. 최종접속)
- 11) 강병근, “국제투자중재상 공익보호와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2호, 2005, pp. 11-33.
- 12) 강병근, “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1권 제1호, 2013, pp. 1-46.
- 13) 김인숙, “FTA ISD 소송절차상 투명성에 관한 연구: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20호, 2014, pp. 8-40.
- 14) 한지희, “ISDS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5, pp. 53-89.
- 15) 김대중·김세진, “EU 투자법원 창설 제안으로 본 국제투자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동향과 시사점”, 「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4호, 2016, pp. 5-28.
- 16) 류병운, “국제중재에서의 투명성과 기밀성의 경계(境界)”, 「서울법학」 제26권 제3호, 서울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p. 630-32.

대해 검토하며, IV장에서는 중재판정 발간에 대한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국내 중재 관련 실무자들 및 중재기관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 II. 2019년 개정 ICC 중재 진행 지침의 의의 및 주요내용

### 1. 의의

2019년 개정 ICC 지침은 ICC 중재규칙뿐만 아니라 ICC 국제중재법원의 실무에 따른 중재 진행 관련 사항들을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게 실무적 지침(practical guidance)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ICC 지침 제1항). 또한 달리 적시되지 않는 한, 동 지침은 적용되는 어떠한 중재규칙 버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ICC 중재사건에 적용된다(ICC 지침 제2항). 이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중재사건이 몇 년도에 개정된 ICC 중재규칙이 적용되는지에 관계없이 동 지침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중재사건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ICC 중재규칙에 따라 그들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은 2019년 개정 ICC 지침이 자동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ICC 국제중재법원의 회장인 Alexis Mourre 변호사는 본 개정에 대하여 중재 실무에 있어 투명성을 제공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중재 이용자들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난 3년 간 도입되었던 새로운 정책들에 부합하는 ICC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sup>17)</sup> ICC는 이미 2016년 2월 22일에 ICC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진행 관련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 지침을 제정한바 있다.<sup>18)</sup> 2019년 개정 ICC 지침과는 달리 2016년 ICC 지침은 2012년 ICC 중재규칙과 ICC 국제중재법원의 실무에 따른 중재 진행 관련 실무적 지침들을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2년 이전의 ICC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ICC 국제중재법원 사무국을 접촉(contact)할 것을 요구했던 것(2016년 ICC 지침 제1항)과는 매우 달라진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진행되고 있는 ICC 중재절차의 경우, 당사자가 원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개정 ICC 지침이 ICC 중재규칙과 함께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

17) ICC, "ICC issues updated Note providing guidance to parties", 2018, available at <https://iccwbo.org/media-wall/news-speeches/icc-issues-updated-note-providing-guidance-parties/> (2019. 3. 21. 최종접속).

18) [http://res.cloudinary.com/lbresearch/image/upload/v1456236629/note\\_to\\_parties\\_and\\_arbitral\\_tribunals\\_on\\_the\\_conduct\\_of\\_arbitration\\_22\\_231116\\_1410.pdf](http://res.cloudinary.com/lbresearch/image/upload/v1456236629/note_to_parties_and_arbitral_tribunals_on_the_conduct_of_arbitration_22_231116_1410.pdf). (2019. 3. 21. 최종접속).

을 의미하므로, 현재 ICC에 중재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서상에 ICC 중재조항을 삽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당사자 및 법률 대리인들로서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비해야 추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2019년 개정 ICC 지침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개정된 주요내용 중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ICC의 중재사건의 정보 및 중재판정 발간에 관한 내용은 장을 달리 하여 III장에서 별도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 2. 주요내용

2019년 ICC 지침의 개정 취지는 1) 중재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평가하여 고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상황 및 관계들을 명확히 하고, 2) 중재판정부 구성에 사무국이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3) 행정비서(administrative secretary)의 의무를 특정하고, 4) 투자자-국가 중재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들을 도입하며, 그리고 5) EU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sup>19)</sup>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sup>20)</sup>

나아가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으로 판단되는 중재사건의 정보와 중재판정의 발간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III장에서 별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중재인 및 중재인 후보자의 이해충돌 고지에 관한 지침

2019년 개정 ICC 지침은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재인 또는 중재인 후보자가 중재의 비당사자들(non-parties)이 중재 결과와 관계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중재에서 “관련된 기업들”(relevant entities) 및 개인들을 파악하여 중재인 후보자들에게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표시(indication)가 중재인 또는 중재인 후보자들에 대하여 그들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관련 다른 기업들과 개인들과 관련되어 고지해야 할 의무를 면책시키지는 않는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사무국에 의해 작성된 그러한 표시와 연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중재인 또는 중재인 후보자는 사무국과 협의하도록 장려된다고 규정한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24항).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중재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1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vailable at <http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3e485e15-11bd-11e6-ba9a-01aa75ed71a1> (2019. 3. 22. 최종접속).

20) Stephen Kho et al, “ICC issues Practice Note on Three Hot-Top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Transparency in “Commercial” Arbitration; and Tribunal Secretaries”, 2019, available at <https://www.akingump.com/images/content/1/0/v2/101924/International-Arbitration-Alert.pdf> (2019. 3. 21. 최종접속).

이러한 인식 하에, 동 지침은 제23항에서 중재인 또는 중재인 후보자가 이해충돌 검토를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예시들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재의 결과와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와의 관련성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무국은 중재절차 초기 단계에서 당해 중재사건과 관련된 기업들을 파악하여 그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중재인 또는 중재인 후보자가 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력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사무국의 업무 부담을 과중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중재인 후보자의 중재 개시 후 중재인의 사임이나 기피 절차에 따른 시간적 지연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무국이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여부의 최종 판단은 중재인 또는 중재인 후보자에게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 지침이 2004년 제정되어 2014년 개정된 “IBA 국제중재에서 이해충돌에 관한 가이드라인”(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IBA 가이드라인’)<sup>21)</sup>보다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sup>22)</sup> 예를 들어, IBA 가이드라인의 경우 이해충돌의 경우를 면제가 불가능한 적색목록(Non-Waivable Red List), 면제 가능한 적색목록(Waivable Red List), 주황색 목록(Orange List), 녹색 목록(Green List)으로 구분하여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경과 기간, 예를 들어, “중재인이 최근 3년 내에 전 직원 또는 파트너 지위에서 일방당사자나 그 계열사와 관련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주황색 목록으로 분류하는 등의 명확화 작업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sup>23)</sup>

## (2) 사무국의 중재판정부 구성 지원

2019년 개정 ICC 지침은 당사자들이 중재법원<sup>24)</sup>의 확인(confirmation)<sup>25)</sup>을 위한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을 지명하거나 배석 중재인들(co-arbitrators)이 의장중재인을 지명할 때마다, 사무국에 가능한 후보자의 추천 또는 중재인 후보자들에 대한 기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들의 공동 요청에 따라, 사무국은 또한 그 중재인 후보자들의 경험, 직무수행 가능성(availability), 이해 충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21) Available at [https://www.ibanet.org/ENews\\_Archive/IBA\\_July\\_2008\\_ENews\\_ArbitrationMultipleLang.aspx](https://www.ibanet.org/ENews_Archive/IBA_July_2008_ENews_ArbitrationMultipleLang.aspx) (2019. 3. 21. 최종접속).

22) Stephen Kho et al, *op. cit.*

23) “IBA 국제중재에서 이해충돌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박영사, 2016, pp. 160-66 참조.

24) ICC의 “중재법원”(the Court)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며, ICC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사건들의 중요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관리기구에 가깝다. 중재법원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이 KCAB 국제중재규칙에 주는 시사점(사무국, 중재판정부, 국제중재위원회의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貿易商務研究』 제39권, 2008, pp. 182-204 참조.

25) ICC 중재의 경우, 중재인명부가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고 당사자 선정방식에 의해 중재인이 선정되기 때문에 모든 중재인은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이 각각 선정한 중재인(co-arbitrators)들이 의장중재인을 지명(nominate) 하고 중재법원이 최종 확인(confirmation)해 주어야 최종 선정(appoint)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들을 접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32항).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이유는 양당사자가 단독중재인을 협의하여 지명하거나 당사자선정 방식에 의해 각각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협의하여 지명하는 것은 중재 실무에서는 사실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sup>26)</sup> 나아가, 동 지침은 당사자들이 사무국과 협의하여 법원의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특별히,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 절차 전에 사무국이 중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의 명부 절차(a list procedure)를 거친 후에, 예를 들어, 제한된 수의 후보자들을 배척(strike)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 선호 순위에 따라 번호를 매기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허용함으로써,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34항). 이러한 중재인 후보자 명단을 통한 중재인 선정절차는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이하 'AAA/ICDR')의 절차와 매우 유사하며, 예측건대, ICC가 AAA/ICDR의 제도를 차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중재인 후보자에 대한 배척(strike) 제도가 없는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인 선정절차와는 구별된다.

### (3) 투자자-국가 간 중재의 투명성 제고 및 중재관정 검토

ICC에 투자자-국가 간 중재 사건 수가 증가하면서, 2019년 개정 ICC 지침은 5가지 실무적 지침을 도입하였다. 조약들(treaties)에 근거한 투자 중재의 특별한 성격의 관점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밀성을 고려하여 중재인 후보자들은 그들이 중재인, 전문가 또는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모든 투자조약에 근거한 사건들의 목록을 그들의 이력서(Curriculum Vitae)에 적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139항). 그리고 당사자들은 ICC 투자조약에 근거한 중재사건에 UNCITRAL 투명성 규칙(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sup>27)</sup>)을 전부 또는 일부 원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국은 공개된 정보의 보관소(repository)로서의 역할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140항). 또한 투자조약에 근거한 사건들의 경우, 중재관정 초안은 투자조약 중재에 경험을 가진 중재법원의 회장, 부회장들 및 위원들(members)에 의해 검토(scrutinize)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141항). 투자중재의 관정문은 총회(plenary session)<sup>28)</sup>에서 검토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sup>29)</sup>

26) 2006년 ICC 통계자료에 따르면, 185명의 단독중재인 중 국내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중재법원이 최종 선정한 경우가 144명(77%)에 이르며 이는 단독중재인 사건 5건 중 4건 정도는 중재법원에 의해 선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당사자선정 방식에 의해 각각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로써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도 5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원석·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제3중재인 선정에 관한 연구", 『貿易學會誌』 제33권 제1호, 2008, p. 3.

27) Available at <https://www.uncitral.org/pdf/english/texts/arbitration/rules-on-transparency/Rules-on-Transparency-E.pdf> (2019. 3. 22. 최종접속)

28) ICC 총회(plenary session)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는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이 KCAB 국

사실 종래의 국제상사중재 사건에서도 정부 또는 정부 관련 기업들이 일방당사자로 참여하는 중재판정 검토의 경우에서도 위원회의(committee session)<sup>30)</sup>가 아닌 총회에서 개최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한편, 투자조약 사건의 경우, 중재판정의 발간은 일반 상사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이 송달일로부터 적어도 2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일방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송달 후 6개월 이내에 발간될 수 있는 것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142항). 마지막으로, ICC 중재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법정조언자(amici curiae) 또는 비분쟁 당사자들의 의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142항).

#### (4) 행정비서(Administrative Secretary)의 의무(제183항 내지 제188항)

2019년 개정 ICC 지침은 중재판정부의 감독 하에 수행해야 할 행정비서의 업무, 예를 들어, 중재판정부를 위해 서신의 초안 작성 및 송부, 중재판정부의 검토를 위한 절차명령 초안 준비뿐만 아니라, 절차 요약, 사실관계의 연혁 및 당사자 주장의 요약과 같은 중재판정의 사실관계 부분 초안 준비 등과 같은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sup>31)</sup> 그러나 모든 중재판정부는 의사결정 기능 또는 기타 중재인의 본질적 의무들을 행정비서에게 위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행정비서의 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인들이 개인적으로 파일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면제시켜서는 아니 된다.<sup>32)</sup>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실무에 익숙한 국내의 중재 실무가들로서는 행정비서의 의미가 생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중재사건 담당자가 중재판정부를 위해 많은 행정적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CC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이 중재판정부에게 전달된 순간부터 사무국의 담당자는 중재절차 진행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로서는 특히 금액이 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절차 진행부터 중재판정의 일부분, 예를 들어, 절차진행 및 사실관계 요약 등의 작성 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또한 젊은 변호사 또는 중재 예비전문가들로서는 중재절차가 대외비로 진행된다 보니 중재절차를 참관하거나 나아가 일정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어 한다. 행정비서 제도는 이러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자연스럽게 발생하였고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중재판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중재판정을 포함한

제중재규칙에 주는 시사점(사무국, 중재판정부, 국제중재위원회의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貿易商務研究』 제39권, 2008, pp. 185-86 참조.

29) ICC (2018), *op. cit.*

30) ICC 위원회의(committee session)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는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이 KCAB 국제중재규칙에 주는 시사점(사무국, 중재판정부, 국제중재위원회의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貿易商務研究』 제39권, 2008, pp. 184-85 참조.

31) 행정비서의 관리적·행정적 업무들의 모든 목록은 2019년 개정 ICC 지침 제185항에 열거되어 있다.

32) ICC (2018), *op. cit.*



중재인의 필수적 의무까지 행정비서에게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개인정보 보호(Data Protection)

ICC 국제중재법원은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EU의 GDPR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2019년 개정 ICC 지침의 제80항 내지 제91항을 추가하여 관련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은 ICC 중재에 참여하는 것을 수락함으로써, 중재에 참여하는 당사자, 대리인, 중재인, 행정비서, 증인, 전문가 및 기타 개인들이 그들의 개인정보가 수집, 전송, 보관 및 발간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82항). 동 지침은 나아가 관련 개인들이 그들의 개인정보의 이용을 인지하고 승낙하도록 할 의무를 당사자들에게 환기시킬 것을 요구한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83항).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은 또한 중재 전 과정과 해당 정보의 적용 가능한 보유기간 동안 중재 절차의 목적에 필요하고 올바른 개인정보만 가공되고 수집, 교환 및 보관된 정보의 안전한 수단이 이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85항 및 제87항). 또한 중재관정부는 GDPR의 취지를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 'TOR')의 조항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84항).

EU GDPR의 적용 대상은 EU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또는 EU 내 존재하는 자에 의해 종속되는 개인정보로서(GDPR 제2조 내지 제3조)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이전을 규율하고 있다(GDPR 제44조 내지 제50조).<sup>33)</sup>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도 국제중재사건에서 유럽의 당사자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수준의 상호 개인정보보호 인증기관으로 등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유럽 소재 법인 및 개인이 국제중재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련 GDPR의 관련 규정을 반영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자체 표준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향후 유럽 당사자들에게 대한민국이 국제중재지로서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이 이용이 편리한 중재기관으로서 선호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강구되어 시행된다면 대한상사중재원으로서 이를 유럽의 잠재적 중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를 홍보할 수 있는 소구점(appeal point)으로 삼아 국제중재사건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3) 류병운, 전계논문, p. 642.

### Ⅲ. ICC의 중재판정부 정보 공개 및 중재판정 발간 정책

2019년 ICC 지침의 개정 사항 중 필자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바로 중재판정의 제도적·전면적 발간 정책 시행의 선언이다. 이는 상사중재의 경우 기밀성이 인정되던 관행과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2018년 설문조사 결과와도 상충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나아가 ICC는 중재규칙이 아닌 동 지침의 개정을 통해 중재판정의 공개를 기본 규정(default rule)으로 정한 것도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이고 각국의 중재기관들에게는 ICC의 이러한 정책이 향후 ICC 중재의 이용을 증대시키는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그 성공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ICC는 중재절차에서의 투명성 제고 정책을 이미 2016년 지침을 통해 중재사건 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동을 건바 있고, 2019년 개정 지침에서는 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제도적인 중재판정 발간 정책까지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2016년 ICC 지침 상 중재사건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2019년 개정 ICC 지침을 통한 관련된 추가적인 규정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 1. 2016년 ICC 지침 상 중재판정부 정보 공개 관련 주요내용

2016년 ICC 지침은 III. 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 C. 제27항 내지 제31항에서 중재판정부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동 지침은 ICC 국제중재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중요할 수 있는 비밀유지의 기대와 질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좀 더 투명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투명성은 중재절차에 있어 좀 더 강한 신뢰를 제공하며 부정확하거나 무분별한(ill-informed) 비판에 대해 중재제도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2016년 ICC 지침 제27항)고 규정함으로써, 중재판정부 관련 정보의 공개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ICC 중재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부합하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ICC 국제중재법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중재사건들에 대하여 중재인들의 (i) 이름, (ii) 국적, (iii) 중재판정부 내 역할,<sup>34)</sup> (iv) 선정방법,<sup>35)</sup> 그리고 (v) 중재의 계류 또는 종결 여부 등에

34) 이는 단독중재인, 의장중재인, 배석중재인(co-arbitrators) 등의 역할 구분을 말한다.

35) 이는 각 사건의 중재인을 누가 선정한 것인지, 예를 들어, 신청인(들), 피신청인(들), 당사자들, 중재법원, 배석중재인들이 선정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 정보를 ICC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6년 ICC 지침 제28항). 실제로, ICC 웹사이트<sup>36)</sup>에 2016년 6월부터 공개된 총 1,074건의 중재사건들에 선정된 중재인 관련 정보들을 살펴보면, 중재인의 이름, 국적, 역할, 선정방법, 중재인의 상태(status),<sup>37)</sup> 사건 상태<sup>38)</sup> 등의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한국 국적의 중재인 선정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한국 국적의 ICC 중재사건 중재인 선정 현황(2016. 6.~2019. 3. 22. 현재)

사건 ID	일자	이름	역할	선정방법
37	2016. 10.	김갑유	배석중재인(Co-arbitrators)	피신청인
105	2016. 12.	신희택	배석중재인(Co-arbitrators)	신청인
106	2016. 12.	신희택	배석중재인(Co-arbitrators)	피신청인
156	2017. 02.	김갑유	배석중재인(Co-arbitrators)	피신청인
159	2017. 02.	김기창	단독중재인(Sole Arbitrator)	중재법원
250	2017. 04.	김준기	배석중재인(Co-arbitrators)	피신청인
282	2017. 05.	최경준	배석중재인(Co-arbitrators)	신청인
340	2017. 07.	장승화	의장중재인(President)	중재법원
765	2018. 06.	장승화	배석중재인(Co-arbitrators)	피신청인

\* 출처: ICC 국제중재법원 웹페이지를 참조하여 저자가 정리·구성.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 22일까지 약 2년 9개월 간 공개된 총 1,074건의 중재사건 중에서 한국 국적의 중재인이 선정된 사건은 9건(약 0.84%)에 불과하고, 사람 수로는 6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북한 국적의 중재인이 중재법원에 의해 선정되어 배석중재인(co-arbitrators)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ICC 웹페이지의 사건 ID 591에서는 2018년 1월 북한 국적의 Lee, Hoon Suk 이 중재법원에 의해 배석중재인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이 사건은 2019. 3. 22.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향후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제도 발전 협력체계 구축 및 추진 시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접촉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sup>39)</sup>

2016년 지침은 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 직을 수락함으로써, 중재인 후보자는 위

36) <https://iccwbo.org/dispute-resolution-services/arbitration/icc-arbitral-tribunals/> (2019. 3. 22. 최종접속).

37) 중재인의 상태는 2가지 유형, 즉 활동 중(active) 또는 교체됨(replaced)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38) 사건 상태는 2가지 유형, 종결(closed) 또는 진행 중(pending)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39)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2019. 3. 27.에 CISG의 90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2020. 4. 1.자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28항의 정보가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것을 승낙하는 것이 된다고 규정하고(2016년 ICC 지침 제29항),<sup>40)</sup> 중재인 관련 정보는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 ‘TOR’)가 중재 법원(Court)에 송달되거나 승인된 이후에 공개될 것이며, 중재판정부 구성이나 당사자 대리인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에 대한 언급 없이 갱신(updated)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016년 ICC 지침 제30항).<sup>41)</sup>

마지막으로, 2016년 지침은 중재판정부 관련 정보가 관련 개별 당사자가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규정들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중재가 종결된 이후에도 ICC 웹사이트에 존속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2016년 ICC 지침 제31항).

## 2. 2019년 개정 ICC 지침의 판정부 정보 및 판정문 발간 관련 추가사항

2019년 개정 ICC 지침은 상당한 양의 규정들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는 2016년도 지침에서 도입한 중재판정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재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 공개가 결정되었다. 나아가, 2019년 개정 지침에서는 중재판정의 제도적 발간 정책 시행이라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이어진 ICC의 비밀유지 정책을 포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기에 이르렀다.

### (1) 중재판정부 정보 공개 관련 추가사항

우선 2019년 개정 ICC 지침은 제34항 전문에 “당사자, 산업계 전반 및 학계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증대시키는 것은 중재가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핵심사항”이라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다시 말해, 중재판정부 및 중재사건에 관한 정보 공개와 중재판정의 발간이 결국 1) 무역 촉진과 2) 중재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ICC 국제중재법원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접수되는 중재사건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vi) 관련 산업 분야와 (vii) 당해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에 대한 정보도 ICC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36항).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앞으로는 ICC에 접수되는 중재사건 중 어떤 산업분야의 분쟁이 많이 접수되는지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중재 사건의 대리인으로 누가 선임되었는지 여부까지 공개되면 이미 ICC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중재인 관련 정보와 함께 취합되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대리인 또는 로펌이

40) 그러나 본 조항은 2019년 개정 ICC 지침에서는 삭제되었다.

41) ICC 웹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중재인들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그러한 정보 중 일자(Date)는 정확한 일자가 아닌 연도와 달만 표시하는 이유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TOR이 송달된 후에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어떤 중재인을 선호하고 얼마나 자주 선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 가능할 것이며, 이는 향후 중재인 기피신청의 이유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중재인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므로 중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지침은 또한 당사자들이 그들과 관련된 특정 중재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ICC 국제중재법원이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39항).

## (2) 중재판정 발간 규정 신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19년 개정 ICC 지침에서는 중재판정의 발간을 기본규칙(default rule)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지침에는 전혀 없었던 내용이다. 2019년 개정 ICC 지침은 중재에 관한 정보의 발간 및 유포가 설립 이래 ICC의 약속들(commitments) 중 하나였고 전 세계 무역 발전의 촉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규정하면서(2019년 개정 ICC 지침 제40항), ICC 중재의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내려지는 ICC 중재판정들이 동 지침 제42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발간되는 것을 승낙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41항).

나아가 사무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작성되는 모든 최종 중재판정 송달 시에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에게 최종 중재판정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중재판정 및 각 사건에서 내려지는 소수 또는 다수 의견도 중재판정의 송달일로부터 적어도 2년 이후에는 모두 발간될 것이라는 점을 통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42항).

다만, 중재판정의 발간 이전 언제라도, 어떠한 당사자도 발간에 반대하거나 중재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그 중재판정은 발간되지 않거나 익명 또는 가명 처리될 것이라고 규정(2019년 개정 ICC 지침 제43항)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발간에 대해 배제(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중재 또는 중재판정의 특정 부분을 포함하는 당사자 간 비밀유지 합의가 있는 경우, 발간은 당사자들의 특별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한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44항). 그리고 사무국은 중재판정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규정들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할 수 있고(2019년 개정 ICC 지침 제45항), 사무국은 재량으로 중재판정의 발간을 언제든지 면제(exempt)할 수 있다(2019년 개정 ICC 지침 제46항).

## (3) 소 결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CC 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부, 중재사건의 산업분야, 대리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중재판정의 제도적 발간

정책의 시행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제상사중재와 관련된 많은 부분, 예를 들어, 기밀성, 일부 소수 그룹에 집중된 정보 및 전문성의 독점화 현상, 중재판정의 선례(precedents)로서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 상당한 과급력을 초래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sup>42)</sup> 그렇다면 다른 국제중재기관들은 중재판정의 발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IV장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포함한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 상 중재판정(중재인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포함)의 발간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해 보기로 한다.

#### IV. 해외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중재판정 발간에 관한 태도

이 장에서는 중재판정(중재인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포함)의 발간에 대한 유럽 소재 4개 중재기관<sup>43)</sup>, 미주 소재 1개 기관<sup>44)</sup>, 아시아 소재 3개 기관<sup>45)</sup>, 그리고 특정 분야에 특화된 3개 기관<sup>46)</sup> 등 총 11개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 상 관련 규정들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 이들 11개 중재기관의 중재판정 발간에 대한 관련 중재규칙 및 관행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크게 4가지 유형의 태도, 즉 1) 전면 발간, 2) 선별 후 편집 발간, 3) 미발간, 그리고 4) 중재인 기피 결정만 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전면 발간

종래에 중재판정을 가공하거나 익명·가명 처리 등 편집하지 않고 전면 발간하는 중재기관은 ICSID, SMA, CAS 항소절차 판정문 등 3개 중재기관이 존재하였고, ICC가 2019년 1월 1일부터 당사자들이 반대하거나 사무국이 재량으로 발간을 면제시키기로 결정하지 않

42) Kim Landsman, Charis Parker & James Carter *et al*,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and Decisions", Report by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of the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2014, p. 1, available at <https://www2.nycbar.org/pdf/report/uploads/20072645-PublicationofInternationalArbitrationAwardsandDecisions.pdf> (2019. 3. 23. 최종접속)

43) 이에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이하 'ICC'),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LCIA'),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이하 'SCC'), Swiss Chambers' Arbitration Institution (이하 'SCAI')가 포함된다.

44)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이하 'AAA/ICDR').

45) 이에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S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HKIAC') 등이 포함된다.

46) 이에 투자중재에 특화된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 해상중재에 특화된 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이하 'SMA'), 스포츠중재에 특화된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이하 'CAS') 등이 포함된다.

는 이상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ICSID, SMA 및 CAS 항소절차, ICC 국제중재법원의 중재관정 발간 관련 규정들에 대해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 (1) ICSID

우선 ICSID 중재규칙의 관련 규정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중재관정을 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러나 중재관정부의 법률 판단의 이유(legal reasoning)를 신속히 발췌본(excerpts)으로 발간물(publications)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CSID 중재규칙 제48조 제4항<sup>47)</sup>). ICSID 협약과 ICSID 중재규칙은 모두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를 당사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중재관정을 발간하고 있다고 한다.<sup>48)</sup> 나아가, ICSID 행정·재정 규칙(ICSI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gulations) 제22조에 따라, ICSID의 사무총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되는 정보 및 조정·중재 신청과 관련되는 정보 등을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ICSID의 웹사이트에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공개 가능한 문서들을 게재하고 있다.<sup>49)</sup> 투자조약중재의 경우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정부의 정책 또는 공법적 규율 등 공법적 요소를 중재절차에 다루기 때문에 중재의 프라이버시<sup>50)</sup>나 기밀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sup>51)</sup>는 점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CAS

스포츠 분쟁들을 취급하는 중재기관인 CAS는 일반(Ordinary) 중재절차와 상소(Appeal)<sup>52)</sup> 절차에 대한 중재규칙이 별도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일반 중재절차의 경우, “중재관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당해 분과 위원장(Division President)이 그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sup>53)</sup>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상소중재절차에 적용

---

47) ICSID 중재규칙 제48조 제4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entre shall not publish the awar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The Centre shall, however, promptly include in its publications excerpts of the legal reasoning of the tribunal.”

48)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p. 414 각주 1384) 재인용.

49) 한지희, 전제논문, p. 61.

50) 중재절차에 있어 프라이버시(Privacy)는 당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밀성과는 차이가 있다. Stefano Azzali, “Confidentiality vs. Transparency in Commercial Arbitration: A False Contradiction to Overcome”, 2012, *available at* <https://blogs.law.nyu.edu/transnational/2012/12/confidentiality-vs-transparency-in-commercial-arbitration-a-false/> (2019. 3. 23. 최종접속).

51) 임성우, 전제서, pp. 413-414.

52) 여기서 상소란 연맹(Federation), 협회(Association) 또는 스포츠 관련 기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한다. CAS 2019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C. Special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Appeal Arbitration Procedure, R47 (Appeal), *available at* [https://www.tas-cas.org/fileadmin/user\\_upload/Code\\_2019\\_\\_en\\_.pdf](https://www.tas-cas.org/fileadmin/user_upload/Code_2019__en_.pdf) (2019. 3. 23. 최종접속).

되는 특별 규정은 “당사자들이 중재판정의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CAS는 당해 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판정문, 요약문(Summary) 및 보도자료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sup>54)</sup>고 규정한다. 위 2가지 유형(일반 또는 항소 절차) 모두 중재판정은 CAS가 일방당사자의 이름을 편집해야 할 이유(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있거나 증인의 이름을 수정해야 할 이유(예를 들어, 스포츠 기구 내에서 발생한 부정부패)가 있다고 믿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의 모든 내용을 당사자, 대리인 및 중재판정부의 성명과 소속을 포함하여 수정 없이 전면 발간하고 있다고 한다.<sup>55)56)</sup>

### (3) SMA

해사중재를 주로 다루는 SMA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반대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칙에 합의함으로써, 중재판정이 SMA 또는 통신원들(correspondents)에 의해 발간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SMA 해사중재규칙 제1조)<sup>57)</sup>, 이를 근거로 중재판정을 SMA Award Service라는 구독서비스의 유료 가입을 통하거나 또는 LexisNexis와 Westlaw를 통해 유료로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4) ICC

ICC 국제중재법원은 2019년 개정 ICC 지침의 발효에 따라 동년 1월 1일부터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자, 대리인, 중재판정부의 실명까지 포함한 중재판정을 제도적으로 전면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위 I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공법적 요소를 다루는 ICSID나 특정 산업분야에 특화된 CAS와 SMA와 달리 국제상사중재를 주로 다루는 ICC의 이러한 정책은 향후 다른 중재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 선별 후 편집 발간

중재판정을 선별하여 익명·가명 처리 후 편집하여 발간하는 중재기관은 AAA/ICDR, SIAC, SCC, KCAB 등 4개 중재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래에서는 위 4개 중재기관들의 중재판정 발간 관련 규정들에 대해 차례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53) *Ibid.*, B. Special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Ordinary Arbitration Procedure, R43 (Confidentiality). 실무적으로는, 중재판정의 발간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분과 위원장이 반복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Kim Landsman, Charis Parker & James Carter et al, *op. cit.*, p. 6, 각주 3) 재인용.

54) CAS 2019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C. Special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Appeal Arbitration Procedure, R59 (Award).

55) Kim Landsman, Charis Parker & James Carter et al, *op. cit.*, p. 6.

56) CAS의 발간된 중재판정은 <http://www.tas-cas.org/jurisprudence-archives> (2019. 3. 23. 최종접속) 참조.

57) SMA 2018 Maritime Arbitration Rules, Section 1 (Agreement of Parties), available at <http://www.smany.org/arbitration-rules-mar-14-2018.html> (2019. 3. 23. 최종접속).



### (1) AAA/ICDR

AAA/ICDR은 2012년부터 선별된 중재관정과 결정들의 초록 또는 요약을 “ICDR Awards and Commentaries”라는 제목의 단일 책자로 Juris Publishing이 발간한바 있고,<sup>58)</sup> 2014년 ICDR 국제분쟁해결절차[ICD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clud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Rules) 2014]는 중재관정이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거나 법률 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선별된 중재관정, 명령, 결정 등을 당사자와 중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편집하여 발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014년 ICDR 국제분쟁해결절차 제30조 제3항)<sup>59)</sup>.

### (2) SIAC

SIAC은 2012년 LexisNexis를 통한 발간을 위해 국제중재 관정들을 선별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싱가포르 중재관정”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책에서 당사자들이 식별 가능한 당사자들의 이름과 정보는 편집하였다고 밝힌바 있다.<sup>60)</sup> 2013년 중재규칙에서는 “SIAC이 당사자들의 이름과 기타 식별 가능한 정보를 편집하여 발간할 수 있다”(2013년 SIAC 규칙 제28조 제10항)<sup>61)</sup>고 규정하다가 2016년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들과 중재관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2016년 SIAC 규칙 제32조 제12항).<sup>62)</sup>

### (3) SCC

SCC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SCC, 중재관정부 및 기타 관정부의 행정비서는 중재와 중재관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SCC 중재규칙 제3조)<sup>63)</sup>, 중재관정의 발간의 구체적인 규정, 예를 들어, 발간 가능성이나 익명·가명 처리 요건 등에 대해 전혀 규정이 없다. 그러나 SCC는 Juris Publishing과 공동으로 1년에 2회 발간되는 “Stockholm Chamber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eview”(원래는 “Stockholm Chamber Arbitration Report”)에 중재관정의 당사자들의 정보 등을 편집한 발췌본을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발간한바 있고 현재도 사무국이 선별하여 편집한 중재관정의 발췌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 발췌본들은 SCC의 웹사이트<sup>64)</sup>에서 자유로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sup>65)</sup> 나아가 SCC 웹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Swedish Arbitration Portal<sup>66)</sup>

---

58) Kim Landsman, Charis Parker & James Carter et al, *op. cit.*, p. 6.

59) Available at [https://www.adr.org/sites/default/files/ICDR%20Rules\\_0.pdf](https://www.adr.org/sites/default/files/ICDR%20Rules_0.pdf) (2019. 3. 23. 최종접속).

60) Kim Landsman, Charis Parker & James Carter et al, *op. cit.*, p. 7.

61) Available at <http://www.siac.org.sg/our-rules/rules/siac-rules-2013> (2019. 3. 23. 최종접속).

62) Available at [http://www.siac.org.sg/images/stories/articles/rules/SIAC%202016%20Rules\\_6th%20Edition.pdf](http://www.siac.org.sg/images/stories/articles/rules/SIAC%202016%20Rules_6th%20Edition.pdf) (2019. 3. 23. 최종접속).

63) Available at [https://sccinstitute.com/media/169838/arbitration\\_rules\\_eng\\_17\\_web.pdf](https://sccinstitute.com/media/169838/arbitration_rules_eng_17_web.pdf) (2019. 3. 23. 최종접속).

64) Available at <https://sccinstitute.com/about-the-scc/digital-library/articles/> (2019. 3. 23. 최종접속).

65) Kim Landsman, Charis Parker & James Carter et al, *op. cit.*, p. 7.

에는 스웨덴 법원에서 내려진 중재 관련 판결들을 게재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4) KCAB

KCAB의 경우,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 등 2가지 종류의 중재규칙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국내규칙과 국제규칙 모두 중재절차 및 중재기록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국내규칙 제12조 제1항, 국제규칙 제57조 1항)고 동일하게 규정한다.

그러나 국내규칙 제12조 제2항과 국제규칙 제57조 제2항의 내용은 경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규칙의 제12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 사무국 임직원, 당사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은 중재사건 또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반면, 국제규칙 제57조 제2항은 “중재인, 긴급중재인, 사무국 임직원, 당사자 그리고 그 대리인과 보조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거나 법률상 또는 소송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사건과 관련된 사실 또는 중재절차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강조 위해 밑줄 추가)고 규정한다(국제규칙 제57조 제2항). 영어와 한글의 차이에서 오는 언어적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유사하지만, 국제중재의 경우에만 활용되고 있는 긴급중재인이 추가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규칙의 경우에도 국제규칙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또는 소송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도 예외사유로 추후 중재규칙 개정 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중재판정의 발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규칙 제12조 제3항과 국제규칙 제57조 제3항은 다소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규칙 제12조 제3항은 “사무국은 중재인 교육 및 사례집 발간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중재판정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강조 위해 밑줄 추가)고 규정하는 반면, 국제규칙 제57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문에 관하여는 사무국이 당사자의 명칭, 인명, 지명, 일자, 기타 당사자 및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강조 위해 밑줄 추가)고 규정한다. 우선 국내규칙의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중재판정을 공개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국제규칙은 중재판정 발간의 특정한 목적 없이도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만 없으면 발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국내규칙에서는 “중재판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제규칙에서는 “중재판정문”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16 개정된 우리 「중재

66) Available at <https://www.arbitration.sccinstitute.com/Swedish-Arbitration-Portal/start/> (2019. 3. 23. 최종접속).

법」 제32조에서는 “중재판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향후 국제중재규칙 개정 시 양 규칙 간의 용어나 중재판정의 발간에 관한 규정을 통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3. 미발간

#### (1) HKIAC

HKIAC의 경우, 중재판정은 (i) HKIAC 앞으로 발간 요청이 전달된 경우, (ii)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삭제한 경우, 그리고 (iii) HKIAC가 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당사자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문 또는 요약본이나 발췌본의 형태로 공표할 수 있다(2013년 HKIAC 기관중재규칙 제42조 제5항)<sup>67)</sup>. 그러나 HKIAC는 현재 중재판정이나 결정을 발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sup>68)</sup>

#### (2) SCAI

SCAI는 2012년 국제중재규칙 제32조(중재판정) 제5항에서 중재판정의 발간은 동 규칙 제44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재판정이나 결정은 (i) 발간 요청이 사무국에 전달되는 경우, (ii) 언급된 모든 당사자들의 이름이 삭제된 경우, 그리고 (iii) 어떠한 당사자도 사무국이 정한 기한 내에 발간을 반대하지 않은 경우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문 또는 발췌본이나 요약문의 형태로 발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4조(비밀유지) 제3항].<sup>69)</sup> SCAI의 경우, 중재판정은 발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SCAI 규칙이 적용된 법원의 일부 판례들은 웹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sup>70)</sup>

### 4. 중재인 기피 결정만 발간

LCIA는 중재판정을 발간하지 않고 있다.<sup>71)</sup> 대신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의 편집본을 발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sup>72)</sup> 이를 위해, LCIA 사무국은 중재법원(Court)의 회장 및

---

67) Available at <http://hkiac.org/arbitration/rules-practice-notes/hkiac-administered-2013> (2019. 3. 24. 최종접속).

68) Kim Landsman, Charis Parker & James Carter et al, op. cit., p. 7.

69) Available at [https://www.swissarbitration.org/files/33/Swiss-Rules/SRIA\\_EN\\_2017.pdf](https://www.swissarbitration.org/files/33/Swiss-Rules/SRIA_EN_2017.pdf) (2019. 3. 24. 최종접속).

70) Available at <https://www.swissarbitration.org/Arbitration/Case-law> (2019. 3. 24. 최종접속).

71) 참고로, 2014년 LCIA 중재규칙 제30조(비밀유지) 제3항은 “LCIA는 모든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의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어떠한 중재판정 또는 중재판정의 일부도 발간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vailable at [https://www.lcia.org/Dispute\\_Resolution\\_Services/lcia-arbitration-rules-2014.aspx#Article\\_30](https://www.lcia.org/Dispute_Resolution_Services/lcia-arbitration-rules-2014.aspx#Article_30) (2019. 3. 24. 최종접속).

72) Catherine Rogers, Eth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E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14, p. 250, 각주 181) 재인용; LCIA, “Challenge Digest”,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7 Issue 3, 2011, pp. 283

Arbitration International<sup>73)</sup>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초안이 작성되며, 당사자, 법률대리인, 중재인들의 이름은 기밀성 유지를 위해 익명 처리된다. 다만, 당해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LCIA 중재법원 위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정보, 예를 들어, “LCIA 중재법원 前 부회장<sup>74)</sup>(단독수행)”[Former Vice President of the LCIA Court (Acting alone)] 또는 “LCIA 중재법원 3인 분과”(Three-member Division of the LCIA Court) 등으로 표기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75)</sup>

## 5. 소 결

이상에서 11개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중재판정 발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조사 대상 국제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에서 중재판정의 발간을 가능토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은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규정들의 내용과 실제 각 중재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중재판정 발간 현황 비교표

전면 발간	선별 후 편집 발간	미발간	중재인기피 결정만 발간
ICSID, SMA, ICC, CAS 항소절차	AAA/ICDR, SIAC, SCC, KCAB	HKIAC, SCAI	LCIA

\* 출처: Kim Landsman, Charis Parker & James Carter et al, op. cit., p. 7의 표를 참조하여 재구성

## V. 결 론

역사적으로 국제상사중재에서 기밀성(confidentiality)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인식은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국제상사중재 관련 교과서들에서도 대부분 발

et seq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LCIA 중재인 기피 결정의 편집본 수록); Geoff Nicholas and Constantine Partasides, “LCIA Court Decisions on Challenges to Arbitrators: A Proposal to Publish”,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3 Issue 1, 2007, pp. 1-42 (LCIA가 중재인 기피 결정 편집본을 발간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서술).

73) 이 저널은 LCIA와 Oxford University Press의 협조 아래 1년에 4회 발간되는 중재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저널 중 하나이다.

74) 참고로, LCIA 중재법원은 현재 7명의 부회장을 두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인으로는 Kim & Chang의 박은영 변호사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75) LCIA 웹사이트의 기피 결정 데이터베이스(Challenge Decision Database)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32개 중재인 기피 결정이 공개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https://www.lcia.org/challenge-decision-database.aspx> (2019. 3. 24. 최종접속).

견된다.<sup>76)</sup> 다만, 석광현(2007)<sup>77)</sup>의 경우, “근자에는 공익과 관련된 중재의 경우 심리 자체의 비밀은 보장하지만, 중재판정 및 그 밖의 중재절차는 달리 취급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소개하면서 “중재절차에서 제출된 문서 또는 정보 나아가 중재판정은 공익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일찍이 지적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중재사건 관련 정보, 예를 들어, 당사자 및 대리인, 중재판정부 관련 정보를 익명이나 가명 처리 등의 편집 없이 중재판정과 함께 공개하던 중재기관이 공익적 요소를 다루는 ICSID나 스포츠나 해사 등 특정 산업분야에 특화된 CAS (정확히는 항소절차)와 SMA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나, 국제상사중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ICC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2019년 개정 “ICC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진행에 관한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 지침”에 따라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중재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중재판정도 제도적으로 전면 발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점점 더 기업화·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최근 전 세계 중재기관뿐만 아니라 각 국가나 도시들조차 국제중재의 잠재적 이용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의 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2018년도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국제중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7%의 답변자들이 국제상사중재에서 기밀성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ICC는 기밀성을 일부 포기하고 투명성을 좀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또한 ICC 중재판정들이 선례(precedents)로서 영향력이 행사되기를 희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국제상사중재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이러한 ICC의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 당분 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고, 현재 ICC에 중재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서상에 ICC 중재조항을 삽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당사자들로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인지하고 대비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76) 김갑유, 전계서, pp. 32-33(비공개와 비밀유지가 원칙인 일반 상사중재와 달리 국제투자중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투명성이 요청된다);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개정판, 박영사, 2018, p. 8(중재는 심리를 비공개하고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임성우, 전계서, p. 3(특히 분쟁과정이나 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대다수의 기업 등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특징이 아닐 수 없다).

77) 석광현, 『國際商事仲裁法研究』 제1권, 박영사, 2007, p. 14.

## 참고문헌

- 강병근, “국제투자중재상 공익보호와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5., “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박영사, 2016.
- 김대중·김세진, “EU 투자법원 창설 제안으로 본 국제투자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동향과 시사점”, 『한국부패학회보』 제21권 제4호, 한국부패학회, 2016.
- 김인숙, “FTA ISD 소송절차상 투명성에 관한 연구: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120호, 법무부, 2014.
- 류병운, “국제중재에서의 투명성과 기밀성의 경계(境界)”, 『서울법학』 제26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개정판, 박영사, 2018.
- 석광현, 『國際商事仲裁法研究』 제1권, 박영사, 2007.
-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이 KCAB 국제중재규칙에 주는 시사점(사무국, 중재관정부, 국제중재위원회의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貿易商務研究』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오원석·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제3중재인 선정에 관한 연구”, 『貿易學會誌』 제33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8.
-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 한지희, “ISDS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5.
- Azzali, A., “Confidentiality vs. Transparency in Commercial Arbitration: A False Contradiction to Overcome”, 2012, available at <https://blogs.law.nyu.edu/transnational/2012/12/confidentiality-vs-transparency-in-commercial-arbitration-a-false/>
- ICC, “ICC issues updated Note providing guidance to parties”, 2018, available at <https://iccwbo.org/media-wall/news-speeches/icc-issues-updated-note-providing-guidance-parties/>.
- Kho, S. et al, “ICC issues Practice Note on Three Hot-Top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Transparency in “Commercial” Arbitration; and Tribunal Secretaries”, 2019, available at <https://www.akingump.com/images/content/1/0/v2/101924/International-Arbitration-Alert.pdf>.

Landsman, K., Parker, C. & Carter, J. et al,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and Decisions”, Report by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of the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2014, p. 1, available at [https://www2.nycbar.org/pdf/report/uploads/20072645-Publicationof InternationalArbitrationAwardsandDecisions.pdf](https://www2.nycbar.org/pdf/report/uploads/20072645-Publicationof%20InternationalArbitrationAwardsandDecisions.pdf).

LCIA, “Challenge Digest”,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7 Issue 3, 2011.

Nicholas, G. and Partasides, C., “LCIA Court Decisions on Challenges to Arbitrators: A Proposal to Publish”,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3 Issue 1, 2007.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8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 3. available at [http://www.arbitration.qmul.ac.uk/media/arbitration/docs/2018-International- Arbitration-Survey-report.pdf](http://www.arbitration.qmul.ac.uk/media/arbitration/docs/2018-International-Arbitration-Survey-report.pdf).

Rogers, K., Eth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E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14.

Zlatanska, E., “To Publish, or Not To Publish Arbitral Awards: That is the Question...”, Arbitr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rbitration, Mediation and Dispute Management, Vol. 81 No. 1, 2015.

Eso Australia Resources Limited v. Plowman (1995) 183 CLR 10, High Court of Australia.

## ABSTRACT

### Main Issues and Implications of ICC's 2019 Updated Note to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on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A Focus on ICC's Policy on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Arbitral Tribunals and Awards

Keon-Hyung Ahn

The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the ICC') has published the Note to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on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2019 Revised Note') which came into force on the 1st of January 2019. The 2019 Revised Note is aimed at providing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with practical guidance regarding the conduct of arbitrations pursuant to the ICC Arbitration Rules as well as the practices of the ICC. Unless otherwise stipulated, the 2019 Revised Note applies to all ICC arbitration cases, regardless of the version of the ICC Arbitration Rules, in accordance with which they are conducted. The most noteworthy amendment is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on a new mandatory transparency system by setting forth the publication of the arbitration case data and arbitral awards, maintaining the rule stipulat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garding arbitral tribunal under the ICC 2016 Note. Among others, the 2019 Revised Note provides that parties and arbitrators in ICC arbitrations accept that ICC awards made as of the 1st of January 2019 may be published, excluding some exception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i) explains five amendments of the 2019 ICC Revised Note, ii) examines major issues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of arbitral tribunal and awards, iii)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at attitude of 11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lastly iv)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arbitration community.

**Keywords** : 2019 ICC Revised Note to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on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Publication of Information of Arbitral Tribunal and Arbitral Awards, Confidentiality, Transparency